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나60732(본소), 2020나6074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 구상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1. 5. 6.

판 결 선 고 2021. 8. 12.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가단7895(본소), 2020가 단236835(반소)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가 2018. 1. 31.경 C에게 특수상해를 입힌 점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47,110원 및 그 중 4,415,370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64,99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5.부터, 1,355,810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각 2020.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10,940원에 대하여는 2020. 7. 15.부터 2021.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반소의 청구확장에 따른 소송비용 포함)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부 대 항 소 취 지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본소부분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부분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반소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가. 반소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다.

나. 부대항소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210,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본소는, 피고가 반소로써 원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지급채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내용이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하여 먼저 살피기로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차 입간판을 집어 들어 C를 향해 던져 그 입간판이 도로바닥에 부딪힌 후 C의 다리 부위에 맞아 C가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된 사실, 그로 인하여 C는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C가 2018. 1. 31.부터 2019. 11. 8.까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① 2018. 3. 19.부터 2018. 12. 31.까지 4,415,370원을, ② 2018. 11. 19. 및 2018. 12. 14. 64,990원을, ③ 2019. 11. 27.부터 2020. 1. 14.까지 1,355,810원을, ④ 2019. 12. 17.부터 2020. 7. 14.까지 210,94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한 불법행위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피고가 납부한 공단부담금 상당액인 6,047,1100원(= 4,415,370원 + 64,990원 + 1,355,810원 + 210,940원) 및 그 중 4,415,370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1. 1.부터, 64,990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지급일 다음 날인 2018. 12. 15.부터, 1,355,810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지급일 다음 날인 2020. 1. 15.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5.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10,940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지급일 다음 날인 2020. 7. 15.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21.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¹⁾).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C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전까지 부담한 요양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2.항에서 원고에게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구상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김정현, 판사 박재성

1)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C의 과실 비율을 40%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과실비율을 고려하더라도 과실상계 후 계산한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채권액[7,488,096원{= (C 본인부담액 6,433,050원 + 피고 급여액 6,047,110원) × 60%}]이 피고의 위 급여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